

# 카드뉴스 [제22-4호]

## 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### 국가연구개발사업 근로계약 체결 연구자 인건비 상한액 폐지 알림

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 
“근로계약 체결 연구자”의 인건비 상한액을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▶ 적용대상 :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“근로계약체결 연구자”
- ▶ 시 행 일 : 2022. 3. 1.(화)부터
- ▶ 주요내용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폐지 전  | 폐지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인건비 지급단가            | 「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」<br>[별표5]인건비 지급단가의<br>상한액 범위를 정하여 운영        | 「강원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」<br>[별표5]인건비 지급단가를 삭제하여<br>“인건비 상한액” 폐지  |
| ‘인건비계상률’<br>범위      | 4대보험 본인 및 기관부담금,<br>퇴직급여총당금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대보험 본인부담금만 포함<br>※ 4대보험 기관부담금,<br>퇴직급여총당금은 제외   |
| 연구과제<br>인건비<br>계상방법 | 인건비 지급단가<br>(4대보험 본인 및 기관부담금,<br>퇴직급여총당금 포함한 급여총액)<br>× 계상률 | 연구자의 월 급여<br>(4대보험 본인부담금만 포함)<br>× 인건비계상률 × 참여 개월 수<br>+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<br>※ 4대보험기관부담금, 퇴직급여총당금은<br>별도 산출하여 합산 |

## Q & A

**Q.** “월급여”를 기준으로 “인건비계상률”을 산정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**A.** 연구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비전임교원, 연구원, 연구근접지원인력 등이 해당됩니다.

**Q.**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A의 22년 3월 달 급여총액(다수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과제별 총합계)이 100만원(a),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이 20만원(b)일 경우에, 다수 과제 중 한국연구재단 과제에서 인건비 40만원(c)과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20만원(d)을 동 과제에서 부담할 경우 ‘인건비계상률’은?

**A.** 참여연구자 A의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‘인건비계상률’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40%입니다.

| 종전(참여율)   | ▶ | 현행(인건비계상률)   |
|---|---|--|
| $\frac{60\text{만원}(c+d)}{120\text{만원}(a+b)} = 50\%$ |   | $\frac{40\text{만원}(c)}{100\text{만원}(a)} = 40\%$ ※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20만원은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제외하면 됨 |

**Q.** 기존 “최소참여율”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?

**A.** 연구개발과제의 최소참여율 적용기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서 “참여율”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등에서 운영해 온 “최소참여율” 적용기준은 폐지되고, 아래의 일부사업에 한하여 “인건비계상률”로 변경되었습니다.

- ▶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과제의 “최소참여율 10%” ⇒ “인건비계상률 10% 이상 유지”,
- ▶ 한국연구재단 일부사업(세종과학펠로우십)의 “최소참여율 50%” ⇒ “인건비계상률 최소 50%”

이에 따라, 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적용기준은 연구자의 연구과제별 월급여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.

예시

한국연구재단 세종과학펠로우십 과제 B의 “인건비계상률 최소 50%”인 경우,  
 - 근로계약서 상 B과제 포함하여 다수과제 참여 시 월급여를 합산한 총액이 500만원이면  
 ⇒ B과제의 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최소 50%를 적용하여 25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산정

문의처 :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집행담당자

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